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주요 업무 현황

2022. 10. 13.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업무 현황	1
II. 예산집행 현황	4
III. 주요 정책·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5
IV. 20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5
V. 2022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32
VI.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35
VII.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38
VIII.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43

I. 업무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기 능

부패 방지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
- 청탁금지·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부패영향평가

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권익구제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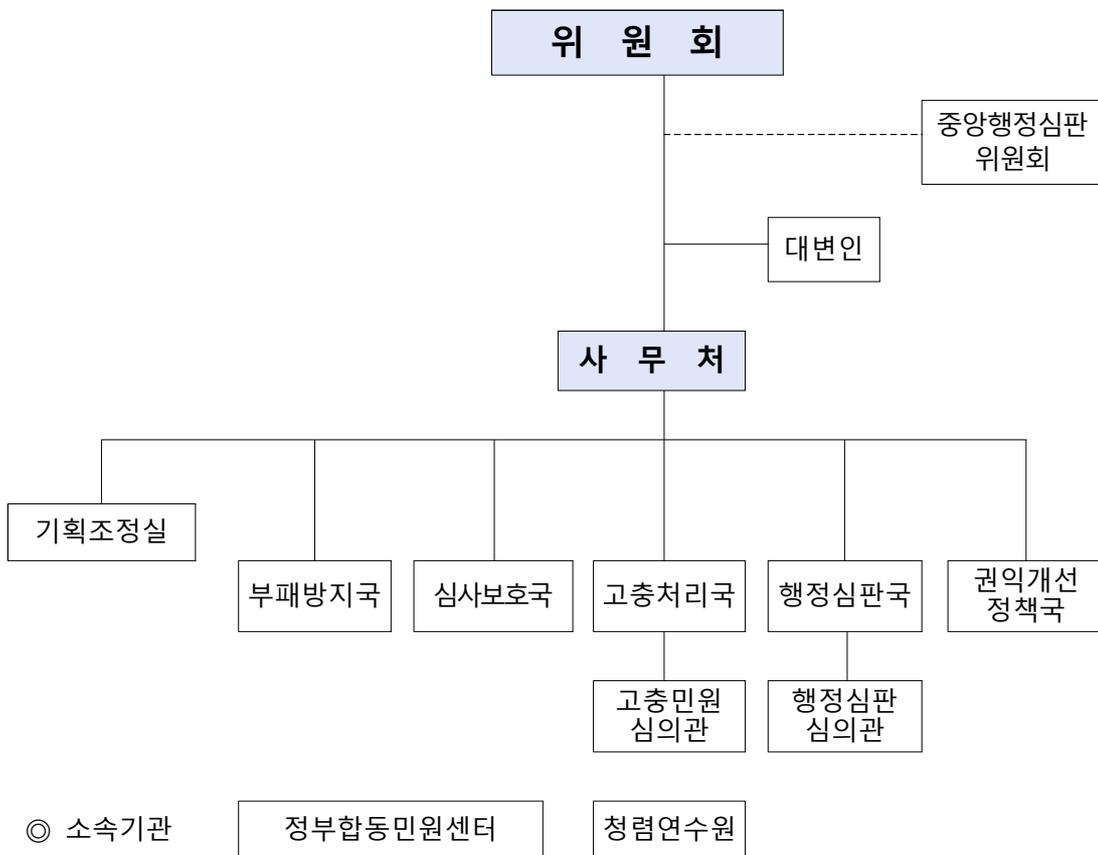
국민소통·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디지털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운영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책환류
- 정부합동 민원안내·상담 및 국민콜110

2 일반 현황

□ 위원회 구성 및 조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4팀 2소속기관



- 정원 : 568명('22.9.30. 기준)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68	4	17	14	35	42	209	235	8	3	1

□ 예 산

○ 총 933억원 : 인건비482억(52%), 기본경비 79억(8%), 주요사업비 371억(40%)

※ 주요사업비 : 37,140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2,021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8,752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21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1,266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331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473백만원
- 행정심판	1,076백만원

□ 소관 법령

종류	법령명
법률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II. 예산집행 현황

(’22. 9.30.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예산	’22예산	’22집행액
국민권익증진	90,835	93,288	65,250
□ 인건비	47,833	48,240	33,591
□ 기본경비	7,437	7,908	4,673
□ 주요사업비	35,565	37,140	26,987
○ 청렴권익 문화확산	1,618	2,021	1,303
청렴권익 정책 알리기	1,618	2,021	1,303
○ 청렴권익 행정정보화	8,861	8,752	7,477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137	5,640	4,813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724	3,112	2,664
○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1,055	1,221	651
반부패 기술지원(ODA)	78	168	74
청렴권익국제교류	401	381	232
청렴권익민간협력	576	672	345
○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10,682	11,266	7,877
부패·고충 제도개선	74	97	45
종합상담창구 운영	10,608	11,169	7,832
○ 국민고충 해소	1,625	1,331	903
고충민원 조사활동	1,625	1,331	903
○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10,580	11,473	8,021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520	2,522	1,656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2,236	2,622	1,71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90	90	43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582	2,682	2,557
공익신고제도 운영	2,242	2,083	1,340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401	746	425
청탁금지제도 운영	509	427	147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301	141
○ 행정심판	1,144	1,076	755
행정심판 운영	1,144	1,076	755

Ⅲ. 주요 정책 · 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1 주요 추진성과

1.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추진

- 고충민원 : 총 27,068건 처리, 2,989건 해결('22.1~9.)
- 집단민원 : 총 180건 처리, 123건 해결('22.1~9.)
- 행정심판 : 총 15,157건 처리, 1,165건 인용 해결('22.1~9.)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등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소하여 약 33,700여명의 권익 침해 해소('22.1~9.)
※ (주요 사례) △한센인촌 방치된 폐축사 등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단지 다용도 실내 실외기 이전설치 조정, △신도시 내 도로로 인한 교통소음 저감 권고 등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취약 지역인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소외·취약계층 대상 고충 집중 해소
※ '22.9월까지 총 76회 운영하여, 1,371건 민원 상담 및 661건 현장해결 지원

□ 집단민원의 적극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의 저감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방지
※ 집단민원 총 123건을 해결, 32,000여명의 주민 숙원 해소('22.1~9.)
(주요 사례) △광역도로 경관개선사업 기관간 비용부담 조정으로 중단된 공사재개 지원(7,462명), △공동주택단지와 초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안전확보(1,029명) 등

□ 공정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행정심판 사건 총 15,157건을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165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22.1~9.)
- 국민중심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및 행정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 기관(66개 특별행심위) 및 온라인시스템 통합 추진
※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방안' 연구용역 실시('22.9~12.)

□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 온라인 민원상담을 적극 처리하고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협의·조정하여 종합적인 민원 상담·해결
※ 온라인민원상담 처리 : 1,995건('19.10~12.)→ 31,949건('20.)→ 36,753건('21.)→ 22,641건('22.9.)
※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 2건('19.10~12.)→ 11건('20.)→ 25건('21.)→ 27건('22.9.)

2. 소통 · 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국민생각함 참여도('22.1~9.) : 안건수 5,033건, 참여자수 423,694명
- 제도개선 권고('22.1~9.) : 16건 (부패방지 5건, 고충해소 11건)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추진
 - ※ (주요사례)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제도 합리적 개선('22.1.),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22.2.) 등
- 부처와 협업하여 사회적 이슈 및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국민의 정책 수용도 제고
 - ※ (주요사례) 임대차 3법('22.4.), 촉법소년 연령조정(법무부 협업, '22.4.), 만 나이로 나이기준 통일(법제처 협업, '22.9.) 등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 주·월간 민원추이, 기관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동향 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공개* (매주·매월)
 - * 1,170개 공공기관·459개 시민단체 제공,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등에 공개
-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피해·불편 적시 대응 및 정책시사점 도출
 - ※ 물류센터 화재 근로자 사망 관련 물류센터 민원분석('22.3.),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민원지도' 개발('22.5.), 중학교 배정 기획분석('22.8.) 및 전통시장민원 기획분석('22.9.)

□ 구조적 부패요인과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5건, '22.1~9.)
 - ※ (주요 사례) 공공기관 비위행위자 징계 실효성 제고('22.5.),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22.9.) 등
 - ※ (국정과제)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추진중)
- (고충해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주거·취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1건, '22.1~9.)
 - ※ (주요 사례) 사유지내 불법주차·주차갈등 해소('22.2.), 도서(섬)지역 생활물류 불편·부담 개선('22.5.),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22.10.) 등

3. 반부패·공정개혁 지속 추진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 개선

- 국가청렴도(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 ('20) 61점, 33위 → ('21) 62점, 32위(95년 측정 이래 역대 최고점 30위권 초반 안착)
- 공공기관 청렴도 : ('17) 7.94점 → ('18) 8.12점 → ('19) 8.19점 → ('20) 8.27점 → ('21) 8.27점

□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하위규범 제정, 유권해석 대응, 교육·홍보 등 적극 추진
 - ※ 시행령('21.12.) 및 운영지침 표준안('22.2.) 제정·배포, 직접교육('22.8. 기준 총 654개 기관) 및 권역별 설명회,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대국민 홍보 등
-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22.6.8.)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교정업무 등 신규 포함
- 제·개정 법령안 및 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 * (제·개정 법령안) 1,083개 법령안을 평가해 112개 법령의 274건 개선권고('22.1~9월) (공공기관 사규) 145개 기타공공기관의 15,513개 사규를 전수점검해 1,693건 개선권고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현장에서 반부패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 종합 실태점검 실시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1.12월까지의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및 '18.7.~'21.12. 기간 중의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행동강령 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22.상반기)
- 부패·공익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 * 복지, 고용노동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집중 신고기간('22.5~8월) 운영, 171건 접수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 ※ (주요 사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실태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 및 감사 요구('22.9.)

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제도 운영

- 신고자 보호건수 : ('18) 33건 → ('19) 73건 → ('20) 78건 → ('21) 50건 → ('22.9.) 28건
- 보·포상금등 지급액 : ('19) 43억원 → ('20) 55억원 → ('21) 47억원 → ('22.9.) 41억원

□ 제도적 기반 확충 등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신고까지 확대하여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확충('22.7.5.)
 -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 대리
 - * 공익신고('18.10.18.) → 부정청탁신고('22.6.8.) → 부패신고('22.7.5.) 도입
-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와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2.1.4)
 - * 공공기관의 자체 책임감면 범위를 '징계처분'에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확대
 - ** (기존) 원상회복 관련 쟁송 → (개정)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
- 보·포상금 지급 강화* 및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상향** 등
 - * 부패신고 보·포상금 등 28억원(456건), 공익신고 보·포상금 13억원(91건) 지급('22.9.기준)
 -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22.7.19.)

□ 범정부 통합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고도화 및 이용 확대 등

-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추가 도입('22.5.19.)하여 의무신고 사항과 위반신고를 처리, 부패·공익 온라인 비실명대리신고 기능 도입
- 공공기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처리 시스템 도입 확대
 - ※ '22.9월 현재 전체 공공기관 1,589개 중 63%에 해당하는 1,002개 기관이 도입
 - * ('20년) 270개 → ('21년) 500개 → ('22.9.) 1,002개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강화

- 중앙행정기관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가현황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 실시

< 환수 등 제재현황 >

(단위: 건/백만원)

'20년도 대상				'21년도 대상			
환수		제재부가금		환수		제재부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2,995	45,425	45	263	133,930	95,742	708	9,855

- 실태점검 결과, 제재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추가로 환수(6억원) 및 제재부가금(25억원) 부과 권고('22.8.8.)

2 주요 정책 추진계획

비전

권익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목표

민생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핵심
추진
과제

주요 계획	정책 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보호
쉽고 편리한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중심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 구현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지원
	공공·민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적극행정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공부문 청렴수준의 획기적 제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보상제도 구축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제도 강화
	체계적 신고 관리로 공공재정 누수 근절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1.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 정부 내 중립적·최종적인 권익구제 전문기관으로서 영세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 해결하고 민생안정 지원

□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능 강화

- (실효성 제고) 민원서비스평가·청렴도평가를 통해 각 기관 민원처리 품질을 제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제3자 입장에서 적극 해결*
* 고충민원 인용률 제고(시정권고·조정·합의 등) : 최근 3년 20.0% → '22.9월 25.3%
- (민생고충 해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서민·소외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 분야 고충민원 집중 해결

주 거	복 지	세 무 · 금 용
 <p>임차권 승계, 강제 퇴거, 시설 개보수 등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고충</p>	 <p>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장애등급 결정 등 저소득층 고충</p>	 <p>단순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과다 세금부과, 보험계약 등 피해</p>

- (현장중심 민원해결) 소외지역·취약계층* 및 영세·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고와 경영상 애로사항 등 적극 상담·해결
* '달리는 국민신문고'(21년 91회→22년 100회) **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연12회)

□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 (집단민원 적극 해소) 대규모 집단민원,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사안 등을 조정·합의를 통해 적극 해결('22.9. 기준, 집단민원 95건 조정·합의)
- (조정 실효성 강화) 초기 현장방문 강화,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활성화로 조정 성공률 제고
※ (사례)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폐쇄 요구(7,606명), 무주 용담댐 인근 주민 환경피해 대책 요구(13,198명) 등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보호

- (지역민원 해결역량 강화) 권익위를 보완하여 지역 현안민원을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컨설팅·우수사례 공유
* 전국 70개 지자체 설치·운영('22.9월), 50만 이상 지자체 설치 확대(개정안 국회 계류)
- (전문음부즈만 활성화) 전문조사관이 군 복무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방·경찰음부즈만 강화
※ 사건 초기부터 전문조사관을 지정·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확산 차단

2. 쉽고 편리한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다양한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신속성 제고

□ 국민중심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 구현

- (행정심판기관 통합)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 통합 추진
 - 각 기관별 의사결정구조, 사건처리·인력운용 현황, 통합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 대상 선별 및 법개정안 제출(~'23.12월)
 - ※ 통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22.9~12월), 공청회('23.1~4월) 추진
- (온라인 시스템 통합)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한 곳에서 청구·진행상황 확인·사건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25.12월)
 - ※ 행정심판 기관 중 60.2%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중
 - ※ 통합에 따른 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23.1~6월)

□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독립성 보장) 행정심판 심리·재결 과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사유 한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 금지
- (전문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 ※ (현행) 법률, 의료 분야 → (향후) 회계, 건설, 의약품 분야 등으로 확대

□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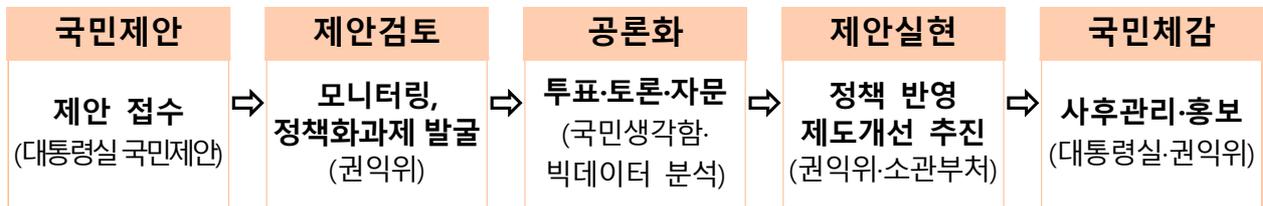
- (EASY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도입, '청구인 맞춤형 심판사례' 제공 등('23.1월)
 - * 처분 유형·일자, 행정심판 종류 등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선택하면 청구서 완성
- (메타버스 체험·홍보)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체험·홍보관*' 개설('22.7월)
 - * 상담관(1:1 화상상담), 체험관(심판정, 모의행정심판), 교육관, 이벤트관(OX퀴즈)으로 구성
 - ※ 향후 체험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24년)

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

◇ 제안, 민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개선 추진, 민원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개선 지원

□ 국민제안의 적극적인 정책화 지원

- (제안접수·정책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 국민생각함 민원연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책과제 발굴·숙성
※ '22.6.23.~9.30.(100일)간 국민제안 제출 : 25,099건
- (이행관리·홍보) '국민제안 정책팀'을 구성하여 발굴된 정책과제의 최우선 정책반영 추진 및 이행관리·대국민 홍보 실시('22.7월~)



□ 공공·민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

- (AI 국민신문고) 연간 2천만건 민원이 집중되는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의 연결기관을 확대*하고, AI 신기술·디지털 원패스 기능 도입
* '22년 9월 현재 1,114개 기관 연결 →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등 2,000개 이상 확대 추진
- (빅데이터 분석) 국민관심 현안이슈에 대해 민원빅데이터와 융·복합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위험성을 예측*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
*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예측 체계' 구축(~'24년)으로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적극행정

- (제도개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주요분야(경제활성화, 청년지원, 사회안전망, 생활속 불공정 등) 관련 제도개선으로 부패·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
※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노인학대 방지 감독체계 및 장기요양보험 정비,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활안정 강화 등
- (적극행정)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전 공공부문에 국민중심의 행정 확산
* 국민이 법령 불명확 등으로 거부된 제안·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

◇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의 획기적 향상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대표적 국제반부패 지표, 한국은 '21년 180개 국 중 32위(62점)

◇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청렴 역량의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채용비리 근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23.상반기) 등 **공정채용 기반 강화·확산**
※ **공직유관단체**(21년 채용·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채용실태 전수조사**(~10월)
- (부패유발 법규 개선) 공공기관 사규(~12월)·지자체 자치법규(22.7월~23년)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불공정·규제로 인한 부패유발 요인 집중 정비
-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 등 불공정 제도 적극 개선

□ **공공부문 청렴수준의 획기적 제고**

-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청탁금지법('16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22년 시행) 등 반부패 행위규범 운영을 내실화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정착
※ 공직자 교육, 워크숍 등 소통 강화(연중),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이행 점검('22.하반기)
- (종합청렴도 평가) 각급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인식·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 평가('22~)
※ **총 573개 기관**(중앙부처 46개, 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199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청렴도 저조기관(4~5등급)은 **청렴컨설팅**으로 **맞춤형 개선안**(조직문화,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제공

□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

- (청렴교육 강화) 맞춤형 청렴교육* 및 법정 청렴교육 이행관리** 강화
* 고위공직자, 공기업(청렴윤리경영), 공정채용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제공
** 기관별 의무교육(연 2시간) 이수실적을 점검, 저조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11월)
- (청렴윤리경영 지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컨설팅('22.10) 등을 통해 공기업 등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투명성 제고 지원

5. 국민에게 신뢰받는 신고체계 및 보호·보상제도 구축

◇ 부패·공익 신고 등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으로
공정사회를 조성하고 건전재정 지원

※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10년간(12~21년) 총 2조 6,539억원의 재정수입 회복증대 발생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제도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확대) 부패·공익신고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의 조력범위를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등으로 확대(개정안 국회 계류)
- (집중신고기간 운영)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공익침해·부정수급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적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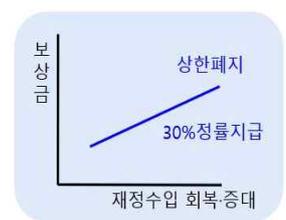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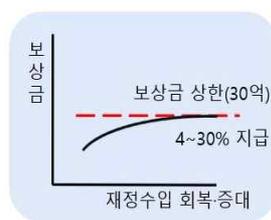
□ 체계적 신고 관리로 공공재정 누수 근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리강화) '청렴포털'로 부정청구 신고·관리, 기관별·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 및 환수금액 등 대국민 공개
※ 중앙·지자체 등 308개 기관의 환수제재 현황 반기별 점검 및 누락 시 환수 등 적극 조치
- (취약분야 실태점검) 부정수급 신고현황 분석결과 파악되는 부정청구 취약·빈발분야(고용·노동, R&D·산업 등)는 기획 실태조사로 집중 점검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 (제도 일원화) 공공재정 환수법 등 5개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국민혼란 예방(~23.6월)
※ 보상금 지급요건, 불이익조치 일시정지·보호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도입 여부 등 통일

- (신고자 보상금 상향) 환수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지급률(4~30%)을 30%로 통일, 상한액(30억) 조정·폐지



- (신분노출 적극 방지) 신고자 신분을 공개·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지시한 자도 처벌(개정안 국회 계류)
-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보호조치 의무 위반자 명단공표, 신고자 정보 관련 기사 삭제 등 신고자 보호제도 보강(개정안 국회 계류)

Ⅳ. 20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지적사항 요약
1	청탁금지법 관련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률 상향 및 구조금 적극 지급 등 공익신고자 실질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선보호·후검토 방식의 신속한 신고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
4	신고접수 처리기관의 담당자 교육 등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6	과실에 의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
7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 직권조사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8	동일 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9	국·공립대학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및 부패방지교육 통계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0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데이터 보안 유지 대책을 포함하여 각급 기관의 효율적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12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 처리 만족도 향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국민신문고를 규율하는 법령 마련에 대해 검토할 것
14	행정심판 인용률, 재결기간, 인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권익위 내부 갑질, 성비위 등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지자체·교육청의 공직부패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공직사회 청렴 역량을 강화할 것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 청탁금지법 관련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교육하였음('22.3.2) ○ 또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각급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22년 하반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 보상금 지급률 상향 및 구조금 적극 지급 등 공익신고자 실질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보상금 지급률을 현재 구간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p> <p>* 현행 4~20% → 개정 후 30%, ** 30억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발의('21.12.24.)</p> <p>○ 구조금을 보상심의위 의결 이전에 위원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조금 제도가 부패신고에 도입*</p> <p>- 또한 공익신고의 경우 긴급구조금 지급주체를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p> <p>* 「부패방지국민위원법」 개정 시행('22.7.5.)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발의('22.4.11.)</p> <div data-bbox="772 1285 1410 17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구조금 지급 절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구조금 : 보상심의위 의결 → 위원회 결정 → 지급 • 위원회가 지급하는 긴급구조금 : 위원회 결정 → 지급 → 보상심의위 의결 • 위원장이 지급하는 긴급구조금 : 지급 → 보상심의위 의결 → 위원회 결정 <p>⇒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속히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 정비 추진</p> </div> <p>○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3. 선보호·후검토 방식의 신속한 신고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	<p>○ 신속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선보호·後검토 체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p> <p>*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발의('21.3.10.)</p> <div data-bbox="772 640 1410 93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안 주요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이후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위원회 최종 결정 시까지 일단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신청 후 위원회 결정까지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 •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div> <p>○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4. 신고접수 처리기관의 담당자 교육 등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p>○ 지자체 신고 접수·처리 담당자 대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22년 상반기),</p> <p>※ 중앙행정기관은 '21년 기 실시(12개 기관)</p> <p>-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시청각 교육자료 배포 완료('22.9월)</p> <p>○ '신고성 민원'을 포함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시 비밀보장 등 주요 유의사항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배포('21.12.24, '22.3.15.)를 통해 안내함</p> <div data-bbox="770 1146 1410 133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배포 기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50개), 수사기관(92개), 지자체(243개), 교육자치단체(17개), 공직유관단체(1,331개), 국회의원실(300개) </div> <p>○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를 현행 위원회에서 조사·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함('22.1.13.)</p> <p>○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이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보호사건의 경우 수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6. 과실에 의한 공익신고자인적사항 유출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과실에 의한 비밀보장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발의('21.6.16.) ○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7.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 직권조사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확보는 '20.11월 유동수 의원이 직권조사권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 '21.7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권익위의 조사권한의 지나친 확대 및 타 부처와의 업무충돌 우려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의 권한을 “피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시, - 그 범위를 ‘이첩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 바 있음 ○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의견진술 기회 제공이 가능해진만큼, 우선 해당 개정내용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추진하고, 향후 직권조사권 추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8. 동일 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조치결정 시 원상회복 요구와 함께 악의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발 조치를 강화하겠음 ○ 또한 보호조치결정이 있음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발의('21.2.3.) ○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9. 국·공립대학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및 부패방지교육 통계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에 국·공립대 교직원 청렴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하고, 대학별 현원 자료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완료함('21.10.28~11.21) * 전문인력(공공데이터 청년인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활용한 청렴포털 일제 정비 ○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로 부진기관 특별교육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22.1.) 및 동법 시행령('22.7.)을 개정 완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육) 전직원 교육 이수율 저조, 교육실적 미제출 기관 등의 청렴교육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예정(11월) - (이행계획) 교육 이수율 제고 등 청렴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기관별 이행계획서 표준안 마련·송부(8.11.), 위원회 제출(~9.16.) ○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기관 교육실적 공개는 운영지침 및 '22년 종합청렴도 대상기관 지표로 설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0.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지방부패 근절을 위해 반부패 행위규범 실태조사와 청렴도 평가를 강화해 지방현장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내실화하고, 부조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식·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 제도운영 및 청렴교육 이수 현황 실태점검* 추진 * (청탁금지)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청탁 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등(5.17. 보도자료 배포) * (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주요 사례 등(6.22. 보도자료 배포) * (청렴교육) 교육 총 이수율 및 저조기관 현황 등(5.24. 보도자료 배포) - (청렴도 평가) 광역·기초 자치단체 전수에 대해 반부패 개선노력*을 포함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 ('21) 42개 기초지자체 평가 → ('22) 226개 전수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시범 평가 실시 - (제도 정비) 지자체·지방의회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의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 추진 - (역량 강화)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과 연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자체교육 지원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1. 데이터 보안 유지 대책을 포함하여 각급 기관의 효율적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22.5.19.)에 맞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해충돌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정부통합 클라우드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보완 강화와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2.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 처리 만족도 향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발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기획 조사를 추진하여 민원 발생 저감 노력을 지속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한센인 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 ‘지하차도 침수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군(軍) 협약 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등 ○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보다 전문화·체계적인 집단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집단민원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언론 기고, 집단민원 해결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다각화 병행 추진 ○ 고충민원 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파견·신규 조사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파견·신규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경험 많은 조사관 등이 실시하는 실무 중심형 역량강화 교육 수립·시행('22.9월 기준 5회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3. 국민신문고를 규율하는 법령 마련에 대해 검토할 것	<p>○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의 접수·처리 및 민원빅데이터분석 시스템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의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p> <p>*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발의('22.1.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주요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이용자(국민)와 이용기관(행정기관)의 권리·의무,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절차, 국민신문고로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등을 이용기관이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div> <p>○ 국민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4. 행정심판 인용률, 재결기간, 인지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현재 운전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인용률은 상승 추세임 (단위 : 건)</p> <table border="1" data-bbox="774 497 1417 741">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인용률(%)</th> </tr> <tr> <th>전체</th> <th>운전사건*</th> <th>운전사건제외</th> </tr> </thead> <tbody> <tr> <td>'19.</td> <td></td> <td>10.0</td> <td>9.7</td> <td>10.9</td> </tr> <tr> <td>'20.</td> <td></td> <td>8.6</td> <td>7.7</td> <td>11.6</td> </tr> <tr> <td>'21.</td> <td></td> <td>10.3</td> <td>7.9</td> <td>16.6</td> </tr> <tr> <td>'22.8월</td> <td></td> <td>8.7</td> <td>5.7</td> <td>17.2</td> </tr> </tbody> </table> <p>* '19년부터 음주운전사건 심리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 인용률은 감소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부당' 여부 적극 판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p>○ '22년도 재결기간은 전년 대비 1.61일(1.9%) 증가한 83.1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사실·법리관계가 복잡한 일반사건의 증가 및 업무량 과다 등에 따른 것으로, - 매주 장기미결사건 점검회의 개최, 사건처리실적을 직원성과평가에 반영, 피청구인 답변서 조기제출 독려 등으로 재결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음 <p>○ '21년도 행정심판 인지도는 39.0%로 전년대비 1.0%p 상승하였음(2021년 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행정심판 홍보·체험관 개설('21.7)과 YouTube 및 지하철 모니터를 통해 행정심판 홍보 영상 송출하는 등 내실 있는 홍보 실시 예정 	연도	구분	인용률(%)			전체	운전사건*	운전사건제외	'19.		10.0	9.7	10.9	'20.		8.6	7.7	11.6	'21.		10.3	7.9	16.6	'22.8월		8.7	5.7	17.2
		연도			구분	인용률(%)																								
전체	운전사건*		운전사건제외																											
'19.		10.0	9.7	10.9																										
'20.		8.6	7.7	11.6																										
'21.		10.3	7.9	16.6																										
'22.8월		8.7	5.7	17.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5. 권익위 내부 갑질, 성비위 등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 자가진단 실시, 갑질사례 주기적인 전파, 간부와 직원을 별도 분리한 맞춤형 갑질예방교육을 통해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한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여 갑질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음 ○ 성비위 발생 시 상담·신고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부 고충처리 옴부즈만, 내부 고충상담원, 사이버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전 부서에 안내('22.4.29.)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피해자 보호강화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22.3.28.) 및 자체 대응 매뉴얼 개정('22.5.16.)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p>16. 지자체·교육청의 공직 부패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공직사회 청렴 역량을 강화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교육청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22.7월)하였으며, 향후 보상금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 ○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포상금 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22.7.19.)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v . 2022년 감사원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2.2.21. ~3.16.	국민제안 감사	○ 주의 - 특별공급 비대상자 확인서 발급 등 부적정	- 관련자가 현재 근무 중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통보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대상 부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2.4.6.~ 5.3. * '22. 6. 16. 감사결과 최종확정 및 통보	권익개선 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각함에 노출되어 있는 부적정 정보 비공개 처리 등 - 민원키워드 클라우드 상 부적정 키워드 비공개 처리 등 - 부당 집행된 특근매식비 반납 - 부당 집행된 출장여비 반납 ○ 주의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유의 - 특근매식비 집행 철저 - 출장비 정산 철저 ○ 개선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절차 보완 ○ 통보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각함 부적정 정보 노출 방지 방안 마련 - 부적정 키워드 표출 방지 등 민원키워드 클라우드 관리 강화 - 적극행정국민신청 의견 제시 수용률 제고 -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철저 - 렌트차량 이용 시 관련 증빙 철저 - 상품권 구매·사용시 관련 지침 준수 - 온라인 상품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리 방안 현실화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 조치 중 ○ 6건 완료, 1건 조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 조치 중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감사기간	대상 부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2.6.8.~ 7.6. * '22. 9. 7. 감사결과 최종 확정 및 통보	정부합동 민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상담사에게 과소 지급한 연차수당 추가 지급 - 부당 집행된 특근매식비 반납 - 부당 집행된 출장식비 반납 ○ 주의 1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실적치 산출 부적정 - 계약보증 이행관리 부적정 - 계약대금 지연 지급 부적정 - 공사 하자보수 보증 이행관리 부적정 - 차량정비대장 및 전기차 충전내역 관리 미흡 -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유의 - 특근매식비 집행 철저 - 출장비 정산 철저 - 업무추진비 휴일 사용시 사전품의 미흡 - 업무추진비 사용 후 영수증 서명 미흡 ○ 통보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버스 활용 현장방문 활성화 - 공무원 채용 공정성 제고 위한 인사관리규정 정비 - 상담사 퇴직적립금 관리·감독 강화 - 상담사 연차수당 과소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 3건 완료, 2건 조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중 - 조치 중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 조치 완료

Ⅵ.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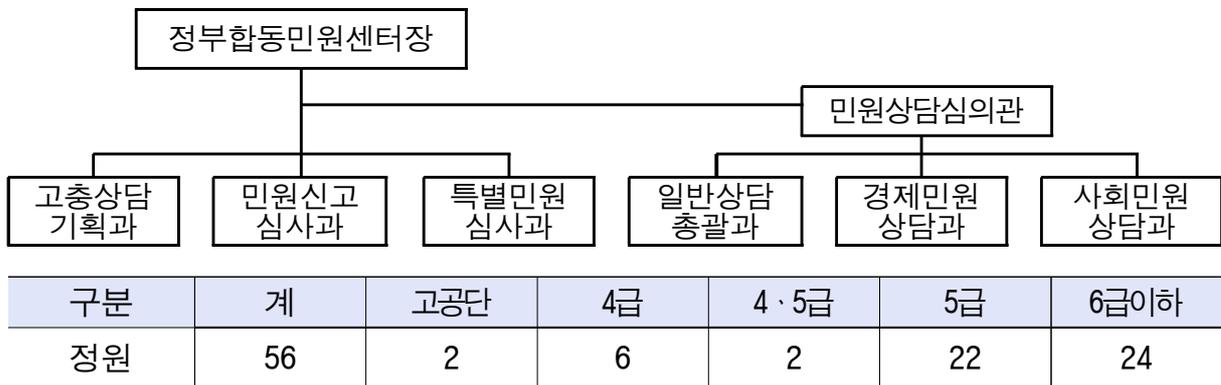
1 정부합동민원센터

□ 기능

- 서울 및 세종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행정심판의 안내, 상담접수 및 화상상담시스템 관리
- 110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부패·부정청탁·금품 등 수수·행동강령 위반 및 공익 신고 관련 상담·접수·분류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분류·사후관리 및 현황 분석·보고
-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 민원증명서 신청 및 교부

□ 조직

- 6과, 정원 56명



□ 예산

- 111억 6천 9백만원(종합상담창구운영)

※ 국민콜110 운영 109억 3천 5백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2억 3천 4백만원

□ 상담접수 실적

(단위 : 건수, '22.9.30. 기준)

구분	민원		국민콜110		대비실 서신 민원	부패 신고 상담	공익 신고 상담	청탁 지 상담	부정 구 상담	이 해 충 방 지 상담	행정심판	
	상담	접수	전화	온라인							상담	접수
실적 건수	25,833	2,471	2,004,572	55,518	13,853	4,991	1,877	624	1,464	67	132	265

□ 110콜센터 운영실적

- 정부콜센터 상담번호 통합·연계사업 지속 추진('15.~'20.)
 - 총 34개 기관 42개 번호 통합·연계
 - ※ 과천청사 소재 콜센터(12개 기관 13개 번호), 전문상담 대행(6개 기관 9개 번호), 비긴급신고전화 연계(16개 기관 20개 번호)
- 비긴급 신고전화의 연계상담 체계 구축
 - 긴급기관(112·119)이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전화에 대해 국민콜110에서 상담·처리('16.10.~)
-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21.1.)
 - ※ 노·사·전협의회를 통하여 전환조건을 합의하고 범정부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따라 전환 (총228명 중 171명 전환, 57명 공개경쟁 채용)
- 이용건수의 증가에도 높은 수준의 응대율 및 만족도 유지
 - ※ 응대율 : ('19년) 93.3% → ('20년) 86.3% → ('21년) 92.1% → ('22년 9월) 94.1%
 - ※ 만족도 : ('19년) 87.5점 → ('20년) 88.2점 → ('21년) 90.1점 → ('22년 상반기) 91.3점
 - 상담DB의 지속적 현행화로 상담건수중 약 82% 이상을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종결
 - ※ 자체종결률 : ('19년) 82.9% → ('20년) 86.1% → ('21년) 83.5% → ('22년 9월) 82.5%

2 청렴연수원

□ 기능

- 반부패·청렴교육 기획 및 운영
- 반부패·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대국민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기획·운영
- 외국공무원 청렴연수 및 반부패 정보교류(ODA)

□ 조직

- 2과, 정원 25명

원장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시간 선택제
정원	25	-	1	-	2	2	18	1	1

□ 예산

- 27억 9,000만원(청렴교육및의식확산, 반부패기술지원)

□ 주요 실적

- 집합교육 : 총 129회, 61,100명 수료('22.1~9월)

구분	합계	원내집합	기관방문
횟수	129	63	66
수료인원	61,100	10,394	50,706

- 이러닝교육 : 총 151회, 201,993명 수료('22.1~9월)

Ⅶ.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1 부패방지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건수	41,808	4,066	7,328	9,435	6,103	9,690	5,186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계	41,733	3,966	7,224	8,718	6,355	10,176	5,294
이첩	1,546	221	306	415	446	128	30
행동강령 위반통보	950	48	78	190	252	361	21
기관승부	4,698	127	377	369	846	2,152	827
종결	34,542	3,570	6,463	7,744	4,811	7,535	4,416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보호	439(124)	9(5)	38(13)	106(30)	107(40)	125(23)	54(13)
보상	6,298(1,610)	119(113)	210(166)	948(196)	1,558(237)	1,773(485)	1,690(413)
포상	37(37)	9(8)	9(9)	6(6)	2(2)	6(6)	5(5)
구조금	15(2)	-	-	-	-	8(-)	7(2)

* ()는 인용건수

** 부패신고 구조금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 시행일(2020.10.17.) 이후 신고건으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

□ **공익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건수	22,871	2,521	3,923	5,164	5,546	4,531	2,186

□ **공익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계	23,322	2,238	3,952	5,165	5,563	4,782	1,622
이첩	1,865	85	37	388	629	432	294
기관송부	8,734	534	943	2,187	2,975	1,621	474
종결	12,723	1,619	2,972	2,590	1,959	2,729	854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보호	551(155)	28(12)	53(20)	131(43)	125(40)	126(27)	88(13)
보상	4,296(2,658)	2,316(1,710)	698(277)	364(211)	436(249)	297(138)	185(73)
포상	69(69)	3(3)	7(7)	29(29)	12(12)	7(7)	11(11)
구조금	126(23)	5(1)	10(7)	19(5)	17(1)	55(7)	20(2)

* ()는 인용건수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건수	8,877	1,265	2,862	2,244	1,195	898	480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계	8,830	1,082	2,692	2,392	1,306	988	383
이첩	360	53	67	136	74	23	9
기관송부	1,642	287	518	347	245	185	68
종결	6,828	742	2,107	1,909	987	780	306

2 고충처리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처리	고충민원							기타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기각	각하	이송·이첩	종결	종결·취하
합계	246,864	245,461	1,577 (1,358)	2,257 (1,855)	24,754 (10,435)	54,587	7,901	30,870	33,344	90,171
2017	26,533	26,623	190 (174)	229 (211)	3,005 (2,201)	863	646	103	7,735	13,852
2018	30,712	29,609	230 (210)	322 (238)	2,516 (1,965)	1,598	636	300	7,299	16,708
2019	56,189	57,624	407 (319)	382 (318)	11,184 (1,818)	14,224	1,104	1,840	5,521	22,962
2020	49,390	45,657	326 (292)	513 (434)	2,272 (1,519)	10,844	1,515	8,114	5,501	16,572
2021	56,423	58,880	220 (191)	430 (367)	3,373 (1,562)	22,745	1,120	16,251	3,099	11,642
2022.9.	27,617	27,068	204 (172)	381 (287)	2,404 (1,370)	4,313	2,880	4,262	4,189	8,435

※ 괄호()는 유사·반복민원을 병합한 수치임

□ 집단민원(5인 이상)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인용)				
		조정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계
2017	232	76	52	3	8	139
2018	229	65	39	5	6	115
2019	266	47	22	8	9	86
2020	299	53	35	11	14	113
2021	310	41	57	8	10	116
2022.9.	250	23	72	7	21	123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단위 : 건)

구분	실시횟수	상담실적				
		현장해결	고충민원접수	상담안내	계	
2021	91	782	206	494	1,482	
2022	1월	7	42	16	53	111
	2월	5	10	6	10	26
	3월	5	51	24	25	100
	4월	11	82	42	64	188
	5월	7	34	3	49	86
	6월	15	211	45	110	366
	7월	9	91	29	63	183
	8월	6	58	24	36	118
	9월	11	82	34	77	193
	계	76	661	223	487	1,371

3 행정심판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취하 ·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전체	운전	운전제외	
20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16.8	9.7	1,307
20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17.3	14.4	1,401
2019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9.7	10.9	1,271
2020	22,367	22,727	1,573	16,783	4,371	8.6	7.7	11.6	1,094
2021	19,229	18,873	1,710	14,892	2,271	10.3	7.9	16.6	1,140
2022.9.	14,897	15,157	1,165	11,934	2,058	8.9	6.0	17.1	1,217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일반사건(의료포함)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리·의결				접수	심리·의결				접수	심리·의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17	5,731 (20.5)	4,669	266 (14.0)	1,633	2,770	1,445 (5.2)	1,343	42 (3.3)	1,244	57	20,742 (74.3)	19,763	3,276 (16.8)	16,228	259	
2018	4,912 (21.3)	5,251	596 (19.1)	2,530	2,125	1,304 (5.7)	1,442	53 (3.9)	1,317	72	16,827 (73.0)	18,460	3,165 (17.3)	15,081	214	
2019	9,258 (38.4)	7,607	297 (14.7)	1,722	5,588	1,292 (5.4)	1,148	40 (3.7)	1,038	70	13,526 (56.2)	12,779	1,230 (9.7)	11,406	143	
2020	6,762 (30.2)	7,139	438 (14.3)	2,627	4,074	1,328 (5.9)	1,080	36 (3.6)	974	70	14,277 (63.8)	14,508	1,099 (7.7)	13,182	227	
2021	5,497 (28.6)	5,465	685 (19.7)	2,795	1,985	1,134 (5.9)	1,218	84 (7.3)	1,071	63	12,598 (65.5)	12,190	941 (7.9)	11,026	223	
2022.9.	4,525 (30.4)	4,274	468 (19.0)	1,990	1,816	923 (6.2)	1,065	124 (12.3)	881	60	9,449 (63.4)	9,818	573 (5.9)	9,063	182	

4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신문고	부처 홈페이지	서신(BH)	지자체 등 이송이첩
2017	3,101,601 (월 258,467)	1,949,387	1,031,012	31,833	89,369
2018	4,735,392 (월 394,616)	2,742,615	1,864,975	34,194	93,608
2019	7,995,116 (월 666,259)	4,599,017	3,234,517	33,974	127,608
2020	9,570,011 (월 797,708)	6,494,339	2,902,774	25,037	147,861
2021	13,265,060 (월 1,105,422)	9,438,994	3,743,984	22,806	59,276
2022.9.	7,988,972 (월 887,664)	6,424,885	1,514,300	13,961	35,826

□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월평균)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2017	87,825 (월 7,319)	81,701	6,124
2018	108,746 (월 9,062)	102,919	5,827
2019	111,049 (월 9,254)	105,962	5,087
2020	137,006 (월 11,417)	129,963	7,043
2021	173,900 (월 14,492)	168,563	5,337
2022.9.	155,276 (월 17,253)	152,334	2,942

□ 국민콜110 운영 현황

(단위: 건, %)

연도	인입콜	응대콜	응대율	일평균 응대콜
2017	2,931,598	2,817,404	96.1	10,522
2018	3,254,756	3,097,860	95.2	11,548
2019	3,139,917	2,928,671	93.3	10,911
2020	3,801,491	3,280,256	86.3	12,174
2021	3,097,391	2,851,423	92.1	10,560
2022.9.	2,060,090	1,911,021	94.1	9,587

Ⅷ.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 소관 시행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 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9. 5. 28.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1. 4. 4.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 17. 일부개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15. 10. 20. 일부개정	부패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6. 9. 2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비위면직자 등의 해임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5호, 2016. 3. 29. 공포,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27. 일부개정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평가 결과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기간, 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교육의 방법·결과제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범위 및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1. 30.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분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9. 10. 15.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0. 12. 22.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등을 한 경우 이첩·재이첩 등을 받은 다른 조사기관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2. 22. 일부개정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결과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및 신청인 등이 미리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 2. 18.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하고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 7. 19. 일부개정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9. 일부개정	<p>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의 이첩 절차,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 부패방지교육 부실 기관·단체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9. 8. 제정	<p>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p>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 17. 일부개정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조정
	2020. 9. 10. 일부개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20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2021. 1. 19. 일부개정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022. 1. 5. 일부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2022. 6. 7. 일부개정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7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을 조사 기관에 이첩·송부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p>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p>	<p>2021. 12. 31. 제정</p>	<p>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 직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p>	<p>2011. 9. 30. 제정</p> <p>2014. 4. 8. 일부개정</p>	<p>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보호조치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규정</p> <p>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p>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4. 4. 8. 일부개정	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4. 9. 2. 일부개정	공익신고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 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6. 1. 25. 일부개정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와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보호조치결정 등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6. 1. 25.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7. 10. 17.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안내 신설
	2018. 4. 30. 일부개정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며,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함
	2018. 10 .16. 일부개정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대리신고되어 봉인·보관된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임
	2021. 10. 19.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 기관 등에 송부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32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를 조사기관 등에 송부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함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p>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2019. 12. 31. 제정</p>	<p>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등의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23호, 2019. 4.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지급금의 범위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와 부정이익의 가액 산정 기준 등 부정이익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행정심판법 시행령</p>	<p>2008. 2. 29. 일부개정</p>	<p>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p>
	<p>2010. 7. 26. 전부개정</p>	<p>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p>
	<p>2015. 12. 30. 일부개정</p>	<p>사용자등록 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등록하도록 규정</p>
	<p>2016. 10. 4. 일부개정</p>	<p>제척 및 기피신청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p>
	<p>2017. 3. 27. 일부개정</p>	<p>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함(타법개정)</p>
	<p>2017. 10. 17. 일부개정</p>	<p>간접강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p>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8. 4. 17. 일부개정	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2018. 10. 30. 일부개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절차 및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20. 7. 14.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타법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일부개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규정
	2008. 12. 31. 일부개정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2016. 9. 2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장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장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외부장의 등의 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
	2018. 1. 16. 일부개정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며, 공직자가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
	2018. 12. 24. 일부개정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2018. 12. 24. 일부개정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
	2020. 4. 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 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2022. 6. 2. 일부개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 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0. 11. 2. 제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6. 9. 27. 일부개정	<p>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p>
	2018. 12. 24. 일부개정	<p>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p>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0. 4. 7. 일부개정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
	2022. 6. 2. 일부개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2008. 3. 3.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
	2010. 8. 11.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 9. 2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시행규칙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2017. 10. 19. 일부개정	간접강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항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2018. 11. 1. 일부개정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10. 30. 공포,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2020. 6. 19 일부개정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 8. 7. 제정	「민법」에서 위임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그 감독에 사항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24일까지로 그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대체 규정을 시행규칙(총리령)으로 상항 제정